

#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(안)

의안 번호	306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3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## 1. 관련법규 및 근거

- 「도시철도법 제42조(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)」 및 「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7조(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)」
- 「하남시 사무위탁조례」 제2조(정의) :  
5.“재계약”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- 「하남시 사무위탁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- 「하남시 사무위탁조례」 제5조(위탁의 적정성 검토), 제6조(위탁계획)
- 「하남시 사무위탁조례」 제7조(의회 동의 등)
- 「하남시 사무위탁조례」 제13조(재계약)

## 2. 제안사유

- 5호선 하남 연장선 이용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, 내실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 : 하남시 복선전철 관리운영 사업
- 위탁시설
  - 사업구간 : 6k609m(하남구간) 시 경계지점(1k116m)~종점(하남7k725m)
  - 역사시설 : 미사역, 하남풍산역, 하남시청역, 하남검단산역 등 4개역
  - 차량정비 : 4편성 32량
- 위탁기간 : 2025. 8. 8. ~ 2028. 8. 7.(3년)
- 운영인력 : 212명
- 위탁사무 내용 :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 전반
  - 도시철도 시설을 이용한 여객운송 및 운임징수 관리
  - 도시철도 차량의 정비 및 열차 운행계획 수립·운영관리
  - 도시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 등

- 기타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업무

○ 선정방법 : 재계약 조례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 → **적정(92.2점)**

○ 2025년 소요예산 (안)

(단위:백만원)

세부항목	사업비	산출근거	비고
계	<b>38,626</b>		부가세 포함(3,486)
운영경비(인건비 등)	32,524	<u>인건비</u> , 전력비, 위탁용역, 시설비	<b>5급 23호봉</b>
일반관리비	1,605	운영경비의 5%	
위탁수수료	1,011	운영경비+일반관리비의 3%	<b>'27년부터 5%</b>

#### 4. 위탁의 적정성 검토 사항

분석기준		분석내용	분석결과	비고
공공성	㉑ 서비스 중요성	민간위탁 서비스의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	높음	경제활동을 위한 필수 대중교통
	㉒ 서비스 수혜 대상	한정적인 주민인지, 불특정 지역생활권의 주민인지 또는 전 주민인지 등 수혜대상 주민의 범위	높음	하남시 전 주민의 교통 편의제공
	㉓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	서비스 공급의 불확정성, 중단가능성, 장기 지속 적인 서비스 공급 필요성 등	높음	위탁기간 종료이후 핵심분야 제외한 업무 직영 지속
	㉔ 서비스 중단 시 파급효과	공공서비스 공급 중단 시 피해의 심각성, 대체적인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	높음	전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발생
효율성	㉕ 민간의 전문성 활용 다른 사무 수행 불가	도시철도법에 의거 철도면허 취득법인 제한 운영	높음	국내 도시철도 운영 최고 공기업
	㉖ 경제적 효율성	민간위탁에 의한 경제적 효율성, 조직 확대 방지, 비용절감(인건비, 기타 제경비의 절감 등) 정도 등	보통	서울교통공사의 인력 운영 및 인건비 높음으로 재정부담 가중
	㉗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	공급 목표, 사업계획의 합리성,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의 설정과 사업성과 측정 가능성	높음	추진실적 확인 및 만족도 평가로 사업성과 측정 용이
	㉘ 관리운영의 투명성	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및 예방가능성, 서비스 공급 관계자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	높음	수탁자의 적격자 선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가능

☞ 전체 8항목중 7개항목이 높음 → 민간위탁 방식 수행 적정 사료

#### 5. 재계약 관련 주요 경과 보고

구 분	주 요 내 용	일 정	비 고
① 협약갱신 신청	○ 서울교통공사⇔하남시 : 협상개시	'24. 5. ~ 6.	
② 운영인력 협상	○ 서울교통공사 제안 : 5년 - 운영인력 : 177명 → 219명(42명 증) - 위탁수수료 : 3% → 5% - 위탁범위 : 관제, 승무, 차량, 역 ○ 하남시 제안 : 3년 - 운영인력 : 177명 → 199명(22명 증) - 위탁수수료 : 3% → 3% - 위탁범위 : 관제, 승무, 차량, 역, 기술 전체	'24. 6. ~ 9.	7차 협상
③ 협상 완료	○ 위탁기간 : 3년 ○ 운영인력 : 177명 → 212명(35명 증) ○ 위탁수수료 : 3% → 3%(‘27년부터 5%) ○ 위탁범위 : 관제, 승무, 차량, 역, 기술 전체	'24. 9. ~ 10.	9차 협상
④ 협약서(안) 협상	○ 실무협상 완료 ← 양 기관 변호사 자문이행	'24. 10. ~ 12.	11차 협상
⑤ 성과평가 실시	○ 92.2점(내부 3명, 외부 2명)-자문의견서 완료	'25. 1. ~ 2.	
⑥ 위탁계획 수립	○ 완료 - 공공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계획	'25. 2. 18.	
⑦ 사무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실시	○ 적격(내부 1명, 외부 6명)- 70점 이상시	'25. 3. 7.	

## 6. 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

- 서울도시철도 5호선 직결운행을 전제로 연장 건설된 하남선(복선전철)의 위탁운영은 기존 5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위탁 운영 필요.
- 도시철도 영위사업의 중요성과 공공성 등을 감안할 때,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재무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.
- 거대 공기업의 공익서비스 비용부담 등으로 인한 구조적 저수익성 및 투자부담 지속 가중되어 市 재정부담 해소방안 강구(위·수탁 종료후 비 핵심분야인 역무·일부기술 직영 등 - 구리시·남양주시 사례)

붙임 1. 위·수탁 성과평가 결과서 1부

2. 위·수탁 협약서 실무협의(안) 1부. 끝.

## 관련 법령 및 조례

### 1 도시철도법 [법률 제19987호, 2024. 1. 9.]

제42조(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2 도시철도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5166호, 2024.12.31.]

제27조(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운영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수탁법인(이하 이 조에서 “운송사업수탁법인”이라 한다)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연도별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계획 및 결산
2. 운송사업수탁법인의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
3. 도시철도운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운송사업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운송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### 3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<개정 2023.5.1.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<개정 2023.5.1.>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
**제5조(위탁의 적정성 검토)** 시장은 사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5.1.>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<개정 2023.5.1.>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23.5.1.>

**제6조(위탁계획)**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, 필요성, 위탁기간 및 조건
2. 범위, 내용 및 타당성
3. 보조 및 지원예산
4. 추진방법 및 일정
5. 기대효과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. <본조신설 2023.5.1.>

**제7조(의회 동의 등)**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5.1.>

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신설 2023.5.1.>

**제13조(재계약)** ①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성과평가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## 평가 결과

○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공공위탁 성과평가 평가점수 : 92.2점

- 평가 항목 : 사업운영분야(90점), 서비스분야(10점)

구 분		평가지표	세부지표	배점 (100)	수탁자 평가	평가자 평가
				100	100	92.2
사업운영 분야(90)	사업운영 비전(5)	사업계획 집행수준(5)	1. 기관의 미션/비전에 따른 경영목표 이행 노력	3	3	2.6
			2. 운영·유지관리계획의 적정	2	2	2.0
	사업성과/ 업무수행 (85)	역사·사무 (20)	1. 역별 인력배치 적정	10	10	8.4
			2. 역사시설물 안전관리 적정	3	3	3.2
			3. 영업 배상보험 가입	2	2	2.0
			4. 역사 청소인력 배치 및 관리 실적	5	5	4.4
		관제(10)	1. 관제 인력배치 적정	5	5	5.0
			2. 관제 운영시스템 등 유지보수 시행	5	5	5.0
		승무(10)	1. 열차운행에 따른 인력운영의 적정	5	5	5.0
			2. 대형행사 등 대비 임시열차 추가증편 운행	5	5	4.8
		차량(전동 차) (10)	1. 전동차 점검 및 검사 시행 실적 (청소 포 함)	5	5	5.0
			2. 전동차 기계장비, 공기구/예비품 관리	5	5	5.0
		기술(11개 분야) (30)	1. 분야별 인력배치의 적정	10	10	10.0
			2.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통한 정상기능 유지	5	5	3.8
			3.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적정	5	5	5.0
			4. 시설물 각종 점검 및 검사 계획 수립이행	5	5	4.4
5. 외주용역 대상 및 용역관리 실적	5		5	3.8		
안전(5)	1. 사업 분야별 비상대응 안전훈련 시행	5	5	5.0		
서비스 분야(10)	사용자 만족(10)	1. 역사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실태 (승차권발매기, 카드충전기, 게이트, 승강 설비 등)	3	3	2.2	
		2. 소화기 등 안전장비 배치 적정	2	2	2.0	
	서비스결과 (5)	1. 고객 만족도 평가 ( ‘행안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’ 준용)	5	5	4.2	